

전주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인권강좌

일시 : 2003.7.29~7.30

장소 : 전주 전북농업인회관 3층 세미나실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 민변전주지부

□ 프로그램

	강 의 내 용		강 사(진 행)
7.29	(소개) 10:00-10:20	- 인권강좌 개설 취지 설명 - 교육참가자 및 단체 소개	교육협력국장, 지역단체 대표
	(1강) 10:30-12:00 (1시간30분)	- 국가인권위원회 활용방안	최정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획담당관)
	12:00-13:00	- 점 심	
	(2강) 13:00-15:00 (2시간00분)	- 헌법과 자유권적 기본권	안주열 박사 (전북대)
	(3강) 15:10-18:00 (2시간50분)	- 인권실무와 법률	박민수 변호사 (전주 민변 회장)
7.30	(4강) 10:00-12:00 (2시간)	- UN과 인권	오완호 사무국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2:00-13:00	- 점 심	
	(5강) 13:00-14:50 (1시간50분)	- 주요 인권현안 및 지역 인권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전준형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6강) 15:00-18:00 (3시간)	- MBTI 검사	노리주희 (웹진 줌마넷 부대표)
	(정리) 18:00-20:00	- 교육평가 및 지역단체간 협력방안 모색	지역 단체

□ 글쓰는 순서

1강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알고 바로 쓰자!	1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기획담당관 최정기	
2강 인권과 헌법	9
/ 안주열 박사(전북대 헌법학)	
4강 국제인권운동의 현황	23
/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5강 전북지역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	28
/ 전준형(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알고 바로 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기획담당관 최정기

1. 들어가는 말

-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인권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 사건은 1974년에 발생한 이른바 '민청학련사건' 및 '제2차 인혁당 사건'이라 할 수 있음. 당시 구속자 가족들이 KNCC 사무실에 모여 수사당국의 불법수사 및 구속자들에 대한 고문을 폭로하고, 그에 항의하면서 인권담론을 사용하였음.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권운동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그 자체가 한국의 인권운동사에서 하나의 사건이며,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3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즉
 - ①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오랜 노력
 - ② 국제사회의 인권운동이 한국에 미친 영향력
 - ③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형성된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그에 기반한 정치권의 동의
- 다시 말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의 국가조직과는 달리 시민사회 및 국제

인권운동의 지속적인 노력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만들어진 조직으로, 시민 사회 수준에서 제기되는 인권관련 요구들을 수렴하여 한국사회의 인권 수준을 고양시켜야 하는 법적,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시책에 따라 그대로 집행하는 단순한 행정기구나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감시하는 기구이며, 형식은 국가기구지만 실질적인 내용과 형식은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특수한 기구임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오는 법적,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점이 시민사회와 협력 및 상생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오늘 강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민단체 관련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및 한계를 소개하고, 상생의 길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임

2.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1) 업무소개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은 2001년 5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고 있음. 특이한 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수행은 법이 규정하는 것 외에 다른 정부부서나 대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오직 그 법과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임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 인권관련 법령(입법과정중의 법령 포함)·제도·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 연구·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인권에 관한 교육 홍보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

-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협력관계의 필요성이 두드러진 부분과 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① 정책 제도 개선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바람직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문제 제기, 논의과정에서의 참여 등 구체적인 협력관계의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임
- ②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활동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재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구제조치, 제도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진정의 안내 등 1차적인 상담 역할, 조사과정에서 자문요청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은 현

제도 이루어지고 있음

- ③ 실태조사, 단체들의 주요 사업 등을 통한 협력사업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는 여러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또 민간 경상보조사업이나 시민실천프로그램 등은 순전히 단체협력지원사업으로 기획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외에도 인권학교나 지방순회간담회, 토론장소 제공 등이 실시되었거나 기획되었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④ 인권교육 및 홍보활동 -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활동이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 밖에도 시민사회 내부의 인권수준과 의식이 향상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법연수생이나 경찰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출판, 문화 콘텐츠 개발(전주인권영화제에 출품한 '6개의 시선' 등)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고, 인권 전문도서관을 목표로 인권자료실도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자산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활용이 없으면 그 존재의미가 없어지는 것임.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한계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의 3권 분립체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음. 국가기관의 특성상 국가인권위원회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음.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인 틀이 그 활동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는 측면이 있음. 여기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틀이 위원회의 활동에 미치는 한계에 대해서 검토하겠음

1) 적용범위 및 조사대상에 있어서의 한계

○ 국민 및 영토에 있어서의 한계

- 법4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경우 영토 개념은 비교적 폭 넓게 해석하여, 외국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포함하고 있음

○ 조사대상에 있어서의 한계

- 법30조 1항 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나 구금·보호시설이어야 하며, 그 업무수행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헌법 제10조부터 22조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미신고 다수인 보호시설의 경우는 조사대상 여부가 논쟁 중에 있음

- 동법 동항 2호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차별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18가지(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 요인을 이유로 3가지 범주에 있어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임

○ 한편 법32조 1항 4호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하여 진정사건이 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1년 이상 지난 사건들, 한국전쟁기의 사건이나 권위주의 하에서

발생한 사건들 등은 진정사건으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다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는 있음

- 또 동법 동항 6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하여 여타 형사사법절차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있음(다만 수사기관의 인지사건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정이 접수된 경우는 조사할 수 있음)

2)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한 한계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을 권고하기 어려움
- 또 동일한 이유로 제기되는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옳고/그름의 기준만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으며, 적법/위법, 법원의 판례, 학자들의 의견, 국제인권규범, 상황적 맥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함
-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 실무적 수준에서 마주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이해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교도소의 의료문제나 시설문제를 들 수 있음. 즉 교도소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수형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고, 수용시설의 낙후 및 열악함이 인권침해의 주요인이라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해당 개개인의

자발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함. 이러한 문제는 정신과 관련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음

3)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 인권담론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기 보다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의 산물이며, 특정 부분이 인권침해 혹은 차별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특히 현재의 상황에서 인권과 관련한 주제들의 경우 사회적 수준에서 첨예한 대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 중에는 단순히 옳고/그름의 문제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존재함
- 이와 같이 아직 사회적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문제들, 특히 시민사회 단체 내부에서조차도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해야 될 때,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도 사실임
- 또한 인권담론과 국익이 충돌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 인권담론에 의한 결정을 하겠지만 국익에 대한 고려를 아주 무시하기 어려우며, 그 균형점에 대한 고민도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와 같은 제반 경우에 있어서 시민사회 내부의 건전한 토론문화가 보다 성숙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그러한 토론의 장에 적극 참여해야 함

4. 상생의 길을 위하여

-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으로 우리 사회도 적극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 및 인권운동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대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영역 및 권한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라는 성격에서 오는 한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있으며, 또 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에 불과함
-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인권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
- 현재 국민 개개인의 수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양자의 건설적인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나쁜 놈’의 처벌을 요구한다든가, 조사권만 갖고 있다는 말을 곡해하여 수사 이상의 수준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 결국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인가 아니면 정체상태에 머무를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의 성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중요한 것은 상호 이해와 인정 및 그러한 토대에 근거한 참여와 토론문화의 형성 등 상생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됨.
- 즉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면서,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고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상호 협력을 통해 양자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함

인권과 헌법

안주열 박사(전북대 헌법학)

I. 들어가며

본래 인간은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인권은 그야말로 천부인권으로서 영구히 보장되고 박탈당하지 아니하는 항구적인 권리로서,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대체로 오늘날 현대문명국가들은 이러한 생래적 인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서 권리장전을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헌법의 이념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이와 같이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침해가 자행되었고, 그러한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가 이룩된 지금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이 여러 형태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테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책수립이라든가, 위헌적인 법령제정, 그리고 위법한 법집행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어린이·여성·장애인·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그밖에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정지역민이 겪는 차별 등 수많은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어도 이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준수하려는 국가기관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노력이 없이는 인권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이러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제도를 준수하고, 인권에 관한 인식 또는

헌법정신에 관한 이해를 고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인권의 개념 및 인권의 발달과정, 인권에 관한 국제적 보장, 그리고 우리 헌법의 체계, 헌법에 규정된 인권의 유형,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인권침해상황, 인권운동 등에 관하여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II. 인권의 개념 및 인권개념의 역사

1. 인권의 개념

(1) 인권개념의 다양한 용례

인권(Menschenrecht)개념은 기본권(grundrecht), 공적 자유(liberté publique), 기본적 인권 등과 함께 여러 가지로 쓰인다. 그 중에서도 인권과 기본권은 「인간을 전제로 한 권리」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의 권리」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서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인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양자는 동일시하여 사용된다.

(2) 인권의 일반적 특징

인권은 보편성, 천부성, 불가침성, 항구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3) 인권개념의 사상적 기초

인권의 관념은 18세기 자연법사상, 천부인권사상,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념 등이 싹트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자연법론자들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성격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자연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계약에 따라 정치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수탁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구성원의 동의에 의거하지 않고 자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구성원은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는다.

2. 인권 개념의 역사

(1) 최초규정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에서 생명권·자유권·재산권·저항권 등이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서는 인권을 자연권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평등권을 강조하였고,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였는가 하면, 신체의 자유,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하였다.

(2)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인권

인권의 역사는 국가에 대하여 보편적·근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또한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로서의 인권의 성문화 등과 같은 국가를 통해 인권 보장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인류의 투쟁의 역사였다.

(3) 인권개념의 역사

(가) 근대 이전의 영국에서의 인권

「大憲章」(Magna Carta Libertatum, 1215),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 인민협정(Agreements of the People, 1647),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79),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 등이 있다.

(나) 프랑스혁명과 인권

인류사상 기념비적인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인류사회는 국가 또는 군주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던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되었다.

(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인권선언과 조약

오늘날 인권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 이념과 가치이고 모든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는 유엔 및 그 전문기구 그리고 지역적 기구들이 합의한 인권에 관한 많은 선언과 조약들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라) Karel Vasak의 인권구분

캐럴 버섹(Karel Vasak)은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인 자유·평등·박애를 기준으로 인권을 「개인의 자유 중심의 인권」(제1세대인권), 「사회권 중심의 인권」(제2세대인권), 「여성, 제3세계 등 집단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독자적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소위 '연대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제3세대인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 인권범위의 확대

오늘날에는 정보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개념(개인 정보의 유출, 포르노 산업의 무차별적 공략, 해커나 크래커의 불법적 행위 등에 의하여 침해되는 인권)이 등장 하는 등, 인권의 내용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Ⅲ. 인권의 국제적 보장과 국내적 보장

1. 국제적 보장

(1) 국제적 보장의 계기

이전의 근대국제법상 인권의 문제는 국제법상의 「국내문제」로 인식하였으나, 제1, 2차 세계대전과 파시즘에 의한 인권유린을 겪으면서,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

(2) 국제연합의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차대전 이후 유엔의 설립과 더불어 제정된 「유엔헌장」은 인권보장이 국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과제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인권법 발달에 기초를 제공하였고, 유엔이 인권을 정의하고 성문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전문에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승인이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본」이 된다고 밝히고, 모두 30개조에 걸쳐 인권항목을 예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제공하고, 개별 국가가 성취해야 할 인권과 자유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선언적인 국제문서에 불과했다는 점, 의미가 모호한 규정이 많다는 점, 그리고 권리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한계를 갖고 있었으므로, 선언의 내용을 강제력을 갖는 국제조약으로서 격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었으며, 18년이 지난 1966년에 이르러서야 두 개의 규약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소위 사회권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소위 자유권규약)

2. 국내적 보장(헌법을 통한 보장)

(1) 혁명을 통한 근대적 인권보장제도의 등장

근대적 인권보장제도는 미국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발전된 바, 「버지니아주의 권리장전」은 정치권력의 압제에 대항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소극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과 정부의 개폐 및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권리를 승인하였고, 「프랑스인권선언」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자연적이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하였고 자유권 행사의 한계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국민주권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인민의 저항권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2) 혁명정신을 근간으로 한 근대시민(입헌주의)헌법

a. 근대시민헌법의 내용

근대시민헌법은 인권을 결코 양도할 수 없고,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로서 명백히 선언하였고, 국가권력은 이러한 인권보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인민은 인민의 동의나 일반의지에 반하는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신분체제와 군주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국민의 동의에 의한 정부(권력)의 정당성 확보라는 새로운 권력관계를 확립시켰다.

b. 근대시민헌법의 한계

근대시민헌법은 권력으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서,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참정권에 있어서도 보통선거를 보장하지 않고, 일정한 재산을 갖춘 남성에게만 참정권을 보장하는 제한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선언된 권리가 실제로는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도식 하에 부르주아계급 남성이라는

「능동적 시민」에게만 인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현대사회국가헌법

a. 최초의 사회국가헌법의 태동

19세기 이후에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비인간적 노동조건, 실업과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 아동노동·질병에 따른 평균수명의 저하, 문맹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지만, 정부는 철저한 자유방임적 자세를 고수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였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민중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며, 사회개혁을 통해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요청되었다. 이러한 요청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바이마르헌법(1919)을 필두로 하여 현대 자본주의국가는 헌법에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이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b. 사회국가헌법의 내용

사회국가헌법에는 사회적 기본권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남녀평등에 입각한 직접보통선거제도의 도입하였으며, 직접민주제(국민소환제도, 인민발안제도 등)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IV. 우리 헌법과 인권

1. 우리 헌법의 체계

우리헌법은 헌법전문, 총설, 기본권(국민의 권리), 통치구조(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등),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관계

오늘날 통설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관계를 목적과 수단이라는 유기적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3. 헌법상 인권

우리 헌법은 제2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조항(헌법 제10조)를 비롯하여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 다양한 인권을 예시하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의 기본권질서의 정신적·이념적 출발점인 동시에 그 기초에 해당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적·국민적 활동의 실천원리이자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문 전단)는 인격성 내지 인격주체성 또는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윤리적 가치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규정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독일과 일본의 전체주의와 군국주의의 비인간적 만행의 경험과 그에 대한반성과 자각을 바탕으로 헌법에 명문화된 것이다.

(나) 「행복추구권」이란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만족감의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의적·주관적 개념이고,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다른 표현(영미식 표현)으로, 그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 권리이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의 실현수단으로서의 권리로 보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반적 인격권의 근거라고 하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인정하고 있다.

(2) 평등권(헌법 제11조)

(가) 「평등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원리인 동시에 모든 공동체 생활관계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조건으로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이다. 평등권은 전국가적 성질을 가지는 생래적 기본권이자 근본규범이며 우리 헌법의 방법적 기초이다.

(나) 평등권 침해법률에 대한 구제방법의 특수성 : 위헌결정할 경우 피해자와 수혜자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기득권자의 신뢰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은 입법촉구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우리의 경우 같은 맥락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있다.

(3) 자유권적 기본권

(가) 자유권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방어적 공권을 의미한다.

(나) 우리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제13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

22조)를 규정하고 있다.

(4) 사회적 기본권

(가) 「사회적 기본권」이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권(제34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제1항), 근로3권(제33조 제1항), 환경권(제35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보건의 보호에 관한 권리(제36조)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헌법 제37조 제1항)

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라도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이를 모두 보장함을 천명하는 것이다(ex,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예권 등)

4. 인권보장의 현대적 경향과 현행헌법상 인권보장

현대의 인권보장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조화적 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인권선언의 사회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한편 자연법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권성의 강조하였으며, 또한 국가적 보장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확산되고 보편화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인권의 절차적 보장을 확대·강화하고, 국제기구에의 가입하여 국제인권법제를 적극 수용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5. 우리 나라의 인권침해상황과 그 구제

인권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와 사인(私人)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인권이 어느 주체에 의해서 침해되는가에 따라 그 구제방법도 다르다.

(1)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는 일반적으로 헌법·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령의 제정이라든가 위헌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판, 국민적 합의에 기하지 않은 국가정책의 시행,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집행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행해질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국회인지, 행정부인지, 법원인지에 따라 구제방법이 정해진다.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오늘날에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사인에 의해서도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권이 불법행위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에는 범죄로서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협의나 협정 또는 자율적 규제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행해질 때에는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그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 경우에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론에 따라 그 합의 또는 협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다.

V. 우리지역사회의 인권관련문제와 인권운동 관련 권리

1. 우리지역사회의 인권관련현안문제

(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문제

(2) 핵폐기장시설유치문제

(3) 새만금간척사업문제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

2. 인권운동과 관련한 권리

(1)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

(가) 개념

저항권은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더 이상의 합법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에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이다.

(나) 저항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a. 미국 독립선언(1776) : 「어떠한 정부형태이든 천부적 인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훼손할 경우에는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안전과 행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원리에 따라 신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임을 확신한다」

b. 프랑스인권선언(1789) :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자연적 권리와 절대적 인권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라 함은 자유·재산·안전권과 압제에 항거하는 권리를 말한다」(제2조)

c. 독일기본법(1968년 개헌) :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민주적·사회적·연방국가적 질서)를 폐지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한 때에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제20조)

d.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독일공산당(KPT)에 대한 위헌판결, 1956) : 「명백

한 불법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현대적 법률관에 의할 때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불법정부에 대해서는 통상의 법적 수단이 무용지물임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e. 우리 헌법상의 근거규정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2) 시민불복종권(right to civil disobedience)

「시민불복종권」은 헌법적 질서가 부정되거나 위협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단순히 정의에 반하는 내용의 개별법령(법제도)이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지라도 특별한 제약조건 없이 행사가 가능하다.

VI. 맺으며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법언이 있다. 그리고 인권은 「주관적 공권」이자 또한 「객관적 가치질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정설이다.

우리는 각자의 인권이 침해받을 때 이를 개인의 문제로 여겨 포기하기 쉽고, 또 주변에서 인권침해를 목격하고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 지나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인권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권을 잃게 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당시 혁명군의 진군가였던 「라 마르세이예즈」는 오늘날 프랑스의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그 가사 가운데에는 「저 압제자의 야비한 무리들 그들은 우리 형제 자매를 살육한다 무기를 들어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압제자의 더러운 피로써 이 강토를 적셔 버리자」라는 살벌하기까지 한 내용이 들어있다. 항간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가사를 바꾸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혁명당시 자유·평등·박애라고 하는 혁명의 이상을 위해 투쟁하였다

는 것을 생생히 전하기 위하여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가까이 우리 헌정사를 보아도 수많은 민주투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역사는 피의 역사이고, 인권은 투쟁과 피의 대가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또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체의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모든 국민이 헌법을 준수하여 헌법이 기본법 또는 최고법으로서의 규범력을 가질 때, 우리 국민은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여 경쟁력을 갖게 되고, 우리 사회는 건전한 사회로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국제인권운동의 현황

오완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1. 들어가는 말

세계화란 엄청난 변화 속에 국제인권운동은 격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세계민중의 권익을 신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냉전의 종식과 함께 다가온 세계도처의 내전과 분쟁과정에서 세계 민중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노력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 일은 너무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보와 전쟁 그리고 테러라는 복잡한 국제적 사건과 정책으로 섞여 있는 양상이므로, 국제인권운동 진영은 그 활동 범위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이 글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에 관한 일들과 인권을 지키려는 국제인권운동 진영의 활동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세계 인권문제의 유형별 분류

1) 세계화에 따른 민중의 생존권 문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급속한 진행으로 국제금융자본에 의한 세계 경제체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3세계의 농민, 노동자의 삶은 급격하게 국제금융자본에 종속되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민중의 삶 보장을 위한 국제적 대안을 찾는 노력이 생략된 작금의 세계화 현상은 선진국 자본에 의한 세계지배구도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수많은 국가에서 노동문제, 실업문제, 부채문제, 정리해고 문제, 농민문제, 빈곤문제, 노숙자문제 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냉전이테올로기의 지속과 민주화 과제

비록 냉전이라는 세계적 이데올로기 대립구도는 무너졌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국가들 대부분은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은 냉전의 잔재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주화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수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부분 독재 및 권위주의 정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구시대적 제도와 법률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금되어 고문당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하여, 중국의 독재체제, 미얀마 군사정부, 말레이시아의 국가보안법, 아이티의 군부독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의 군사정권 등 여전히 냉전은 존재하고 있으며, 민주화란 과제는 이들 국가에서 진행형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양심수가 양산되고, 고문이 자행되고, 국가에 의한 살해가 진행되고 있다.

3) 인종 및 종족간의 전쟁과 갈등

냉전을 주도하던 구소련과 미국이라는 세계지배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이라는 초유일 강국이 등장했지만, 세계 각 지역간의 분쟁과 전쟁을 조정하는 새로운 질서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인종간 종족간의 분쟁이 종교문제 및 이데올로기문제와 복합적으로 뒤얽혀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브룬디, 인도의 잠무 카시미르 지역, 코소보, 인도네시아의 이란 자야 등 세계 약 40개 국가에서 내전과 분쟁이 진행 중이다.

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분야의 인권문제

세계화에 따른 노동문제, 실업문제, 부채문제, 정리해고 문제, 농민문제, 빈곤문제, 노숙자문제를 비롯해, 각국에서 관습으로 묵인되던 여성할례문제, 태아살해문제, 여성에 대한 엽산테러문제, 외국인이주노동자문제, 인신매매문제, 매매춘 문제, 난민문제, 환경의 문제 등이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주요한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5) 빈곤 및 질병의 문제

UNAIDS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3천 6백만 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있으며, 매년 약 530만 명의 새로운 감염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무서운 질병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감염인의 인권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약 1,500명의 감염인이 보고되었으며, 수천의 보고 되지 않은 감염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경우 인구의 약 70%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하며, 아프리카 대륙전체가 오랜 내전과 치명적인 질병 그리고 보건권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6) 소수민족의 자결권 문제

러시아의 체첸, 인도네시아의 아체지역, 중국의 티벳과 신양 위구르, 북아일랜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점령지역, 스리랑카의 타밀족, 쿠르드족 문제 등 수많은 소수민족이 독립을 위해, 민족자결권을 외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적인 구금과 고문, 살해 행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7) 테러, 안보와 전쟁문제

중동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테러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또한 수많은 민간인을 살상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체첸에 대한 공격, 미국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및 이라크 침공 또한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것이며,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3. 국제인권운동의 현황

국제적으로 인권을 지키려는 인류의 운동형태는 국가간 기구(IGO)와 비정부기구(NGO)에 의한 것으로 크게 대별된다.

1) 국가간 기구의 노력 - UN, 유럽연합 인권위 등

1948년 이후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권리들을 견고한 국제인권규준들로 발전시키는 활동들을 계속해 왔다. 먼저 1976년 효력이 발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ESCR)'이 제정되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들은 고문, 인종차별, "실종", 비사법 처형 그리고 여성차별에 반대하는 유엔의 여러 국제협약들을 탄생 시켰다. 지금도 유엔에서는 선주민 권리에 관한 선언의 초안, 무장분쟁지역에서의 아동보호에 관한 기준 그리고 인권운동가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국제인권규준들이 제정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인권규준의 발전과 아울러 유엔 인권보장장치, 즉 유엔인권위원회, 각 조약위원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등의 활동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고, 수많은 인권문제를 개선시켜왔다. 유네스코의 인

권교육사업, 유니세프의 어린이 구호사업, 유엔식량기구의 식량지원사업 등도 그나마 국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켜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럽연합 인권위원회도 유럽연합의 가입국 모두에게 사형을 폐지시켰고, 다른 지역 국가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 침공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안하무인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며, 강대국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등 국제인권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 존재이유와 의미가 위협성에 노출되어 있다.

2) NGO의 노력

국가간 기구들과의 NGO의 협력

NGO는 유엔이 출범할 때부터 유엔에 직접 참여해 왔다. 유엔헌장 제71조는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에 관계된 NGO와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에서의 협의자격을 가진 NGO들은 모든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산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 유엔범죄방지회의 및 여성지위위원회 등이다. 특히 인권위원회와 같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의 논의과정에 매우 중요한 서면발언 또는 구두발언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NGO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의 특별절차 과정에서 제안, 정보제공, 제소를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자격을 가진 단체들 외에도 수 백개의 NGO가 유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유엔공보과(DPI)는 유엔활동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또 유엔사무처가 주관하는 공개회의와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수많은 NGO에게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부여한다. 이 자격을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자격과 혼동하면 안 된다. NGO가 협의자격을 취득하면 유엔의 인권옹호활동 및 인권증진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협의자격을 가진 NGO들이 연합체로 묶인 협의자격 민간단체협회 (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status, CONGO)라는 기구도 있다.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는데 NGO는 빼놓을 수 없는 유엔의 협력자이다.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의 노력

국제적십자사, 국경없는 의사회, 국경없는 기자회, CARE, 국제 빵재단, 옥

스팸 등 수많은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의 직접적인 활동은, 분쟁 및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실제로 구호하고 있다. 이들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직접적으로 돈을 모으고, 정부 및 정부간 기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국제사회의 구호활동을 직접 조직한다.

국제인권단체의 노력

수백 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Human Rights Watch, 국제법률가위원회, Free TIBET, Free Burma, FIDH, OMCT, ARTICLE 19, Minority Rights Group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캠페인 조직, 대정부로비, 언론홍보 등을 통해 세계여론에 호소하고, 국제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고문, 사형제도, 양심수, 난민, 인권교육,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 성적 소수자의 권리 등 수많은 영역의 인권문제를 국제 이슈화 시켜내고, 실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을 구명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4. 국제연대성을 향하여

세계는 분명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국제인권운동 진영이 있다. 국제인권운동진영의 역할과 행동에 따라 세계는 문명 혹은 야만을 선택할 것이다. 인권운동을 위협하는 미국 및 서방의 독주와 서구중심의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 인류를 지치게 한다. 약 20억의 인구가 절대빈곤에 처해있는 현실을 딛고, 약 40개국에서 자행되는 전쟁과 살육을 딛고 새로운 문명화의 길로 인류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보편성에 근거한 국제연대성이 세계민중에게 요구된다. 새로운 세계를 세계민중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한 투쟁과 연대가 특히 국제인권운동진영에게 돋보이는 이유는, 그 중심에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

전준형(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1. 들어가는 말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권리를 자각하고, 또 남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길을 열어 주는게 필요하다. 생활 속의 작은 인권문제부터 국가기관의 인권침해까지 인권교육을 통해 한국사회 곳곳의 인권문제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나뉠대로 느끼는 인권체감지수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인권현황과 과제에 대해 나뉠대로 고민해 본 것을 미약하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 생활에서 길을 가다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인권을 체감하게 된다. 인터넷, 목욕탕, 길거리 등 공공기관에서의 CCTV의 설치 등을 통한 개인정보수집 및 인권침해에 대해 정말로 무감각하게 느끼게 된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 주민등록의 지문날인, 각종 행정기관의 개인정보서류 제출 등 사실 우리는 매일인권침해의 현장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가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저항했듯이 이제는 눈을 치켜들고 국가나 개인과의 저항이 필요하다. “안돼요, 그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라고 주장해야만 그나마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부는 효율성, 정보화, 전자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한다. 너무도 많아서 우리가 무감각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지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라고 명문화해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는 기본이 되고 있다.

2. 법과 인권

그러나 우리에게 법은 멀다. 국민들의 법적 보호보다는 돈 없음으로 인한 법 집행에 대해 불신과 원망이 가슴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인권에는 법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헌법을 근간으로 세계인권선언, 각종국제 규약, 헌행법률에 대한 공부와 체계적 인식은 인권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 중 헌법공부는 인권에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도 않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무방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에 대한 제, 개정, 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권차원에서 재정비하는 노력은 현재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인권의 내용이다.

그러면 전북지역에서 인권침해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 집회시위의 경찰의 사찰, 집회금지통고 - 집시법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헌법 21조)를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국민통제수단으로 법 집행을 진행한다. 일상적인 사진

㉡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 삼례슈퍼 살인사건, 익산택시기사살인사건, 파출소경찰관살인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연행과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는 너무나 심하다.

㉢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결성- 97년

㉣ CCTV 설치 - 노동감시 98년 버스기사 해고사건, 대응(주)노동감시, 현대자동차전주공장 RF카드도입논란, 전북대병원 ERP 시스템 도입 논란

㉤ 검문검색의 일상화 -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검문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동조는 인권침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

- 총기사용(농협 노조원, 삼천동 시민을 향한 총기사용 논란)

※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제4조 (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㉞ 2002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인권운동가 가해자의 역고소와 검찰의 기소행위

㉟ 21세기 최고의 인권침해 사건 - NEIS(교육정보시스템) 도입

NEIS 도입은 국민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국가가 침해하고 있는 엄청난

난 사건이다. ‘사소한(혹은 중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하나도 없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명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적인 근거도 전혀 없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불법을 진행하고 있다.

3. 전북지역의 인권현황

①자유권

㉠경찰, 검찰 등 인권침해는 수없이 발생한다.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일상적 무시는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공권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교정기관의 관행으로 서신 및 신문 등 독서 제한, 그리고 집필에 대한 제한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행형법을 무시하고 외부와의 차단을 통해 회유, 협박, 그리고 이송은 전형적인 교정기관의 인권침해 유형이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개인인권침해는 현재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국가보안법, 보호관찰법, 준법서약제 등 반인권적인 법률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 또한 각종 각서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파업노동자에 대한 회사복귀 각서, 경찰의 범질서 준수 각서요구는 정말로 인간의 내면을 제약하는 인권침해이다.

㉣목욕탕, 길거리, 기업의 CCTV 설치, 인터넷실명제는 신체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권침해이다.

㉤카메라를 통한 초상권(肖像權) 및 명예훼손(名譽毀損)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 논란

②사회권

㉦생명권 - 새만금, 방사선 핵폐기장 저지 활동

㉧반전 평화 활동 - 국방비인상, 무기도입 저지에서부터 일상적 폭력문제 홍보

㉨<SOFA> 개정운동과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활동,

㉩민간인 학살 규명 - 익산역 폭격, 전주형무소학살 진상규명

㉔ 새만금, 방폐장 등 지역개발이데올로기를 통한 마녀사냥식 언론보도와 인권침해

㉕ 환경권 - 각종 환경보호활동 등

㉖ 교육권 - 자립형 사립고 지정 철회 활동과 NEIS 강행 저지 활동

㉗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㉘ 여성인권 -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 성매매 방지 특별법제정, 호주제 폐지 활동

㉙ 노동권 - 노동3권의 확립과 최저임금제 확보, 비정규직 철폐

㉚ 각종 정보공개청구권

③ 소수자 보호

㉛ 아동, 청소년, 노약자

㉜ 이주노동자 - 고용허가제 그리고 산업연수생(전북은 5,000여명으로 추정됨)

㉝ 양심적 병역거부 - 평화 및 모병제 제도화

㉞ 장애인 - 장애인 시설정비와 인식전환

㉟ 동성애자 -

④ 공소시효배제

반인륜적, 사회적인 학살이나, 정권탈취, 국가권력(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도규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

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61.9.1>

4. 전북지역 인권과제의 방향

① 시민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

②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강화와 인권지킴이 육성

③ 인권단체간의 네트워크형성 - 각종인권침해에 대한 고발, 인권상담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단체들간의 자료지원,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 등

5. 전북지역 인권운동 주제

① 반전평화운동을 중심에 두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② 개발연합세력에 맞서, 새만금, 방폐장 등 총체적인 반 인권정책에 싸움을 전개한다.

③ 일상적 인권침해 고발과 지속적인 국가기관 감시, 특히, 경찰, 검찰, 교도소 등을 일상적으로 감시한다.

④ 전자화, 효율화에 맞서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과 각종 법 제,개정활동을 전개한다.

6. 전북지역 인권운동의 조직적 과제

①전북지역과 전국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높인다.

②국가인권위 등 정부기구와의 협력과 견제를 진행한다.

③노동, 여성, 교육, 환경, 인권 등 각 단체회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지원한다.

④시민을 위한 인권상담기구 상설화를 추진한다.

7. 나오는 말 - 투쟁과 함께 한 인권의 역사

우리 국민들은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들고 반인권과 싸워왔고, 독재정권과는 죽음을 던진 투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조금씩 향상시켜 왔다. 때문에 인권은 항상 투쟁 속에서 확장된다. 오늘의 인권적인 내용이, 내일에는 반인권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와 기어이 도달해야 할 인류의 평화를 위해 각자의 조건과 처지에 맞추어 투쟁하고 각 단체별로 연대 할 때만이 인권의 진전이 확보된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개발연합세력에 맞서 끈질기게 연대하고 힘있게 투쟁하는 것이 현재 전북의 인권상황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